

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의장

1. 제정이유

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정산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-3396-8157 FAX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사업 등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정산보고 등)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